

##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

남양주시금곡동체육회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■ 후보자 결격사유

1. 남양주시 금곡동 외 거주자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군·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4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군·구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5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군·구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 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
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
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
6. 지방자치단체장,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

7. 사회적 물의,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
2025년 2월 2일

남양주시금곡동체육회  
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